

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4선거구 김희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서울시 내에는 약 270동 가량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이
존재하고 있으나, 그 동안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은 관련 법령
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님에 따라, 건축물 안전관리에 매우
취약한 대상으로 위험 상황에 방치되어 왔습니다.
- 이에, 서울시에는 그 동안 「재난안전법」 및 「서울시 재난 및
안전관리 기본조례」에 따라 정밀안전진단, 정밀안전점검 등
시설물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위주로만 해당 건축물에 대한
안전관리를 지원해 왔습니다.

- 그러나,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「건축물관리법」이 시행됨에 따라, 구청장이 ‘소규모 노후 건축물’ 등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, 시장이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 - 이에,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축물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

 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